

## 일반용역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정(안)

2023. 12.

현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공정계약단	현정훈	055-922-4367


# 일반용역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정(안)

## 1. 제정이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적 평가 부분은 상대평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제안서가 1건 뿐인 경우 상대평가가 불가능하여 제안서 평가부서가 임의로 절대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평가기준이 모호해지고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어 절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하고 평가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절대평가 시 5단계 등급평가(수, 우, 미, 양, 가) 및 등급 간 배점간격 (제6조 및 별표1)
- 제안서 설명회의 생략 및 변경, 서면·온라인 평가절차 전환 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한 사전 동의 의무화(제5조 제4항)
- 심사 공정성 논란 제기 등 사전 방지를 위한 제안서 평가부서의 공정성 저해행위 금지(제5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3항, 제4항)
- 제안서 청취 단계에서 제안서 제출자의 익명성, 공정성 저해행위 금지 및 평가위원의 심사 거부(제7조)

	<b>일반용역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기준</b>	지침번호	제 3 0 9 2 호
		시행일	2024.01.01.
		담당부서	공정계약단
		담당자	현정훈

개정연번	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23.12.29	제3092호	협상계약 유찰로 진행되는 일반용역 제안서 절대평가 기준 마련

## 목 차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타 기준과의 관계)
- 제5조 (단독 제안서의 평가)
- 제6조 (정성적 평가)
- 제7조 (단독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 제8조 (기타사항)
- 제9조 (재검토기한)

부 칙  
별 표

# 일반용역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 입찰”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한 자가 1인 뿐인 경우를 말한다.
2. “무응찰”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한 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단독 제안서”란 단독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무응찰로 유찰된 후 발주부서가 수의계약 대상자를 지명하여 제출받은 제안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 또는 계약이 해지되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용역의 단독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1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타 기준과의 관계) 이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및 「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단독 제안서의 평가) ① 발주부서 및 공고 담당부서는 제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이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부서는 단독 입찰 또는 유찰을 사유로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③ 제안서 평가부서는 단독입찰 또는 유찰을 사유로 제안서의 익명성 위반 또는 제안서 규격 위반 등 감점사항의 평가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④ 제안서 평가부서는 「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정성적 평가)** ① 정성적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② 제안서 평가부서는 이 지침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별표 1에 따른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 용역계약 체결의 시급성, 관련 업계 현황, 정량적 평가 점수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부가 정보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④ 제안서 평가부서는 평가위원에게 정성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후에는 재평가 또는 평가점수의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제7조(단독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입찰공고문에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명시하였다가 제안서 설명회를 생략하는 경우 평가위원 및 단독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입찰공고문에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단독 제안서의 제출자가 제안서 내용의 발표를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부서 및 단독 제안서의 제출자는 단독 입찰이라는 사유로 제안서 설명회에서 익명성 및 심사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은 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발주부서는 해당 제안서의 심사를 취소하고 당해 용역에 대해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안서 절대평가방식(제6조 관련)

1. 세부 사항별로 등급별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1	등급별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한다.				

< 등급별 기준 >

- 수 등급 :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며 제안내용이 극히 우수한 경우
- 우 등급 :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며 제안내용이 대체로 우수한 경우
- 미 등급 : 제안요청 최소 기준을 만족한 경우
- 양 등급 : 제안요청 기준을 대부분 만족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이 대체로 미달되는 경우
- 가 등급 :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이 모두 미달되는 경우

2. 수, 우, 미, 양, 가 등급별 배점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배점의 100%	배점의 85%	배점의 70%	배점의 55%	배점의 40%